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74호
2.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 외 23명
3. 발의일자 : 2021. 2. 5.
4. 회부일자 : 2021. 2. 9.

II.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2.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이병도 의원 외 23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2174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으로 범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구성비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표-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사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일점 장소추행	계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5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5]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3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32,029

-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이었으나, 2015년 24.9%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18.4%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5배 이상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아울러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편집한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공유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 수법도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는 2020년 5월 19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¹⁾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교육청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표-2]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구분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 및 위험, 피해 예방 방법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개념 이해, 사례 살펴보기 및 피해 상황 예방·대처 방법
교육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초 5~6학년 및 중 1~3학년
교육기간	'20. 6월~12월, 학급당 1시간	'20. 5월~12월, 학급당 2시간

**[표-3]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실시 현황**

(단위 : 교, 학급)

초		중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25	170	37	323	62	493

**[표-4]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전반적으로 교육이 만족스럽다.	54.7	29.1	13.1	1.7	1.4
②	강사가 전문적으로 잘 설명했다.	63.3	23.6	10.4	1.4	1.2
③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64.9	25.2	7.6	1.1	1.2
④	디지털성범죄가 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51.6	25.9	16.9	2.8	2.8
⑤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과 지원기관을 알게 되었다.	54.8	27.7	13.6	2.2	1.7
	평균	57.86	26.30	12.32	1.84	1.66

- 이러한 면에서 동 제정조례안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본칙 규정으로 계획 수립(안 제4조), 예방 및 대응 교육(안 제5조),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안 제6조), 피해자 지원 센터(안 제7조), 위탁(안 제8조), 자문위원회(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1조)를 규정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4월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 ② 피해학생 보호 및 상담 지원 ③ 가해학생 선도 조치 및 회복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민주시민생활교육과-9414, 2020.4.29.).
- 따라서 안 제4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그림]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



3)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²⁾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온 서울 세이프)’ 사업³⁾ 및 주요 신고센터별 지원 유형 등을 홍보·안내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업무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3) (찾아가는 면접상담) 혼자 상담을 받으려 가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힘들 때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심리적 지지와 상담 지원

(진술 동행) 불법 촬영 피해자임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동행 (증거수집 방법 안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알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진술 시 제출할 증거,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

(지원 방향 찾기) 피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지원 방향을 함께 점검 (기관 연계) 의료·심리상담 기관 연결, 삭제 지원기관 연계 안내

[표-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신고센터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유형

구분	신고번호	상담시간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연계)	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보호 시설 (연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02-2275-2201	월~토 10:00~17:00	○	○	연계	연계	연계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⁴⁾	02-735-8994	평일 09:00~18:00 (온라인 24시간)	○	○	○	연계	연계	연계
온라인 : www.women1366.kr/stopds/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뜨래상담실	010-3232-1318 010-8232-131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	연계	○	○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	-	○	○	○
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00~17:00	○	○	-	○	○	○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평일 13:00~17:00	○	○	○	○	-	-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연세의료원 02-3274-1375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	-	○	○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서울대병원 02-3672-0365		○	○	-	○	○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중부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056		○	○	-	○	○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북부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	○	-	○	○	연계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동부	국립경찰병원 02-3400-1700		○	○	-	○	-	연계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남부	보라매병원 02-870-1700		○	○	-	○	-	연계

○ 따라서 안 제10조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4)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을 비롯한 피해자 상담 지원부터 삭제 지원(방송통신위원회 연계), 수사·법률·의료지원, 보호시설 제공 등 원스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 과정을 무료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 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